

전주지방법원 2018. 5. 23 선고 2016가단8635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

피 고 1.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5. 9

판결 선고 2018. 5. 23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6,811,327원과 그 중 26,506,027원에 대하여 2015.12. 9.부터 2016. 5. 2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2. 25.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(변경전 상호 : 주식회 사 D, 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, 신용보증원금 2,550만 원, 신용보증기간을 2015. 2. 24.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(연 12%)로 계산한 지연손해금, 채권 집행을 위한 비용, 추가 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공하고,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, 이후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.

다.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2015. 12. 9. 국민은행에 26,506,027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채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비용으로 305,300원을 지출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6,506,027원,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 305,300원의 합계 26,811,32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6,506,0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. 12. 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. 5. 21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

가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채무자 회생법'이라 한다)에 의하면,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(제424조),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며(제458조),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

있고(제460조),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,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(제548조 제1항, 제535조).

나. 살피건대, 2017. 4. 10.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958호로 B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었고,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2017. 6. 28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, 신고한 파산채권 전액이 시인되어 파산채권 전액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,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최 수진